

2018.03.27

문의사항  
박민영 관세사 T/ 02-6011-3033 메일/ mypark@esein.co.kr  
박성희 차장 T/ 02-6011-3053 메일 / shpark@esein.co.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1. 개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요사항

#### ◇ 개정이유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조정하려는 것임.

#### ◇ 개정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661호, 2018.3.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연 1천분의 16"을 "연 1천분의 18"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재	개정안
연 1천분의 16	연 1천분의 18

2018.03.27

### [서울세관] 『수입세액 정산제도』 협의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지난 22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정산업체 및 확인관세사를 초청해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협의회에서 서울세관은 업체에서 제출할 자료 간소화 등 전년도 정산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정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정산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7년에는 10개社를 선정하였으며, 시행 2년차인 올해에는 기존 10개社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20개社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향후 심사인력 증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업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 [서울세관] 『FTA인증상담센터』 운영

서울세관은 신규(연장)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작성방법 등을 상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FTA인증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 [운영] 주 5회(월~금)
- [장소]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 4과 『인증상담센터』
- [대상] 신규(연장)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작성 등 상담을 받고자 하는 업체
- [신청방법]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FTA인증 상담센터 메뉴에서 신청
- [문의] 자유무역협정4과 fta010@customs.go.kr